

경보전과 대상 건축물(제55조의2제1항 관련)

1. 운수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- 나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
- 다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
- 라.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
- 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여객이용시설

2. 대규모점포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
3. 영화상영관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(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